

주택거래계약 신고서

관리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즉시	
① 매수인	성명(법인명)	주민(법인)등록번호	국적	
	주소(법인 소재지)	거래지분 분의		
	전화번호	휴대전화번호		
	외국인의 토지	<input type="checkbox"/> 주택용지(아파트)	<input type="checkbox"/> 주택용지(단독주택)	<input type="checkbox"/> 주택용지(기타)
	매수용도	<input type="checkbox"/> 레저용지	<input type="checkbox"/> 상업용지	<input type="checkbox"/> 공업 용지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
② 매도인	성명(법인명)	주민(법인)등록번호	국적	
	주소(법인 소재지)	거래지분 분의		
	전화번호	휴대전화번호		

신고 사항	계약일		잔금 지급일		
	③ 주택의 종류	<input type="checkbox"/> 아파트 (<input type="checkbox"/> 재건축 <input type="checkbox"/> 재개발)			
	④ 주택의 소재지 및 지목 · 면적	소재지			
		지목	토지면적	m ²	대지권비율 분의
	⑤ 계약대상 면적	토지	m ²	건축물(주거전용면적)	m ²
	주택의 거래가격	계		원	중도금 지급일
		계약금		원	
		중도금		원	
		잔 금		원	
	⑥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				
⑦ 자금조달계획 (해당자만 기재)	<input type="checkbox"/> 제출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제출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없음				
⑧ 해당 주택 입주계획 (해당자만 기재)	<input type="checkbox"/> 본인입주 <input type="checkbox"/> 가족(직계존속 포함)입주 <input type="checkbox"/> 임대(전·월세)				
중개업자	성명(대표자)			주민(법인)등록번호	
	상호			전화번호	
	사무소 소재지				
	성명(대표자)			주민(법인)등록번호	
	상호			전화번호	
	사무소 소재지				
참고사항					

「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거래계약 내용을 신고합니다.

신고인

중개업자
중개업자

년 월 일

(서명 또는 인)

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유의사항

1. 「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실제 거래가격은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「소득세법」 제97조제1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가격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2. 주택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는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주택거래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.(이 경우 거래당사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)
3. 주택거래계약 내용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,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법 제51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4. 담당공무원이 법 제27조의2에 따라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에게 계약서, 거래대금지급 증명서면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,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,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 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작성방법

- ①·② 거래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주소란에 각각의 거래지분을 표시합니다.
- ③ 주택의 종류에는 해당 주택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(중전의 「주택건설촉진법」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포함)안의 주택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안의 주택의 경우에는 재건축 또는 재개발에 각각 ○표시를 합니다.
- ④ 주택의 소재지 및 지목·면적에는 주택 소재지 지번과 단지명(건물명), 동·호수까지 상세히 적고, 토지대장상의 법정지목·면적, 등기부등본상의 대지권 비율을 적습니다.
- ⑤ 계약대상 면적에는 토지와 건축물(주거전용면적)을 구분하여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습니다.
- ⑥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은 주택의 거래계약내용에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에만 적습니다.
- ⑦ 자금조달계획은 주택의 거래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라 매수인이 작성한 내용을 첨부해야 합니다.
- ⑧ 해당 주택 입주계획은 해당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이후 매수인과 관련된 첫 번째 입주자를 기준으로 적습니다.
※ 매도·매수인, 중개업자 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(간인 처리)하여 첨부합니다.